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8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101560 저작권침해금지청구 등의 소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상현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하스
	담당변호사 백진욱
변 론 종 결	2026. 7. 23.
판 결 선 고	2026. 8.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휴대전화, 외장하드, 전자장치 및 인터넷 저장공간 사이트에서 별지 목록 기재 영상의 원본, 사본 및 2차적저작물 등 일체의 폐기청구를 구하는 부분 중 '등 일체'의 폐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8

가. 별지 목록 기재 영상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 대여, 판매, 전시, 소지하거나 이를 피고 또는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휴대전화, 외장하드, 전자장치 및 인터넷 저장공간 사이트에서 별지 목록 기재 영상의 원본, 사본 및 2차적저작물을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5. 10. 22.부터 2026. 8. 2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가. 별지 목록[1] 기재 영상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 대여, 판매, 전시, 소지하거나 이를 피고 또는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고,[2]

나.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휴대전화, 외장하드, 전자장치[3] 및 인터넷 저장공간

1) 원고들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별지 목록을 "인터넷 사이트 'D'중 원고들이 운영하는 'E' 채널((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재된 영상저작물 일체"라고 기재하여 '일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일체'로 기재할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별지 목록을 "인터넷 사이트 'D'중 원고들이 운영하는 'E' 채널((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재된 영상저작물"이라고 선해하여 기재한다.

2) 원고들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영상에 대하여 복제, 공중송신, 배포, 대여, 판매, 전시, 소지를 하거나 이를 피고 또는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SNS 계정 등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서는 아니되고,'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선해하여 기재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8

사이트에서 별지 목록 기재 영상의 원본, 사본 및 2차적저작물 등 일체를 모두 폐기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F'라는 상호명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다. 원고들은 D 사이트에서 'E'라는 채널(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이 사건 채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H 한국어학원'이라는 상호명으로 한국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26. 1. 7. 위 학원을 폐원한 자이다.

나. 원고들의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 등

1) 원고들은 'E'라는 캐릭터를 활용하여 애니메이션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제작하였고, 이 사건 영상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널에 게재하였다.

2) 이 사건 학원 직원들은 이 사건 영상에 베트남어로 된 자막을 넣어 피고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I) 및 틱톡 계정(I)에 게시하였다.

---

3) 원고들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휴대전화, 외장하드를 비롯한 전자장치'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선해하여 기재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8

다. G의 피고에 대한 이메일 발송

G는 2025. 7. 23. 피고에게, '원고들의 영상이 이 사건 학원 SNS[4] 계정에 사전 협의 및 동의 없이 무단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모든 크리에이터의 영상은 당사 및 크리에이터의 공식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확인된 게시물에서는 해당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를 학원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상업적 용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이에 원고들의 영상이 포함된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 해당 콘텐츠의 추가 사용을 중단하며,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및 이에 대한 피고의 회신

1) 원고들은 2025. 9. 8. 피고에게, '피고와 이 사건 학원은 원고들에게 광고 영상 제작 등의 비용을 지급하고, 원고들로부터 이용허락에 관한 동의를 받아 이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저작물을 SNS 계정 등에서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사용함에 따라 원고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추후 원고들의 저작물이 재차 다량으로 복제되어 베트남 국적의 틱톡 계정 등에서 재업로드되는 등 원고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 우려되므로 원고들의 저작물들의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과 이 사건 학원 홍보 목적으로 원고들의 동의 없이 복제·변경하여 보유하고 있는 영상들을 모두 삭제·폐기할 것 및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 원(= 500만 원 × 20개)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2) 이에 피고는 2025. 9. 11. 원고들에게 '피고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 문제된 모든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후 실제로 모든 게시물이 삭제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의 저작권이 침해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4)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의미하는 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8

을 통감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손해배상금으로 영상 1개당 500만 원, 총 1억 원을 청구하는 것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사료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휴대전화, 외장하드, 전자장치 및 인터넷 저장공간 사이트에서 이 사건 영상의 원본, 사본 및 2차적저작물 등 일체의 폐기청구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휴대전화, 외장하드, 전자장치 및 인터넷 저장공간 사이트에서 별지 목록 기재 영상의 원본, 사본 및 2차적저작물 '등 일체'의 폐기청구를 구하고 있으나, 위 '등 일체'라고 기재하고 있는 부분의 경우 그 범위를 명확히 알기 어렵고, 이 부분 폐기 청구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휴대전화, 외장하드, 전자장치 및 인터넷 저장공간 사이트에서 별지 목록 기재 영상의 원본, 사본 및 2차적저작물 등 일체의 폐기청구를 구하는 부분 중 '등 일체'의 폐기청구 부분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

3.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학원 직원들은 원고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학원을 홍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8

하기 위하여 위 학원 SNS 계정에 이 사건 영상을 무단으로 수정·변경하여 게재함으로써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비롯한 원고들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는바, 피고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위 직원들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휴대전화, 외장하드, 전자장치 및 인터넷 저장공간 사이트에서 이 사건 영상을 폐기할 것을 청구하고, 침해의 예방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영상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 대여, 판매, 전시, 소지하거나 이를 피고 또는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청구를 하며,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126조에 따라 그 손해배상으로 각 5,000만 원,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른 위자료로 각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학원 직원들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영상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고자 노력하였으나, 원고들과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학원의 SNS 계정에 부득이하게 이 사건 영상을 활용한 것이며, 위 영상들을 이용할 당시 출처가 원고들임을 표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의 SNS 계정에서 이 사건 영상을 모두 삭제하였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영상의 폐기를 청구하는 부분은 이미 이행이 완료되어 부적법하다.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의 SNS 계정에 이 사건 영상을 게재함으로써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해당 금액이 원고들이 그 권리의 행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8

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이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126조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그 금액이 과다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판단

가.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7호는 영상저작물을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영상은 영상저작물에 해당하고, 그 저작자는 원고들이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학원 직원들이 원고들의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영상을 30초~1분 30초로 짧게 편집하고, 베트남어 자막을 넣어 피고가 운영하는 SNS 계정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학원 직원들은 이 사건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위 영상의 길이를 편집하고 위 영상에 베트남어 자막을 추가함으로써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이 사건 학원에서 운영하는 SNS 계정에 게재함으로써 공중송신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학원 직원들은 원고들이 보유하는 이 사건 영상에 대한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학원 직원들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영상 사용에 관한 이용허락을 얻기 위하여 사전에 메일을 보내는 등 일정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그 침해행위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8

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학원 직원이 'J' 또는 'K'이라는 상대방에게 저작물 이용허락을 구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직원이 위와 같이 이메일을 보낸 상대방은 원고들이 아닌 다른 저작자인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 학원 직원들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영상의 이용을 허락하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그 침해행위의 고의나 위법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학원 직원들은 오히려 그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영상을 게재하는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학원 직원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영상에 관한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위 직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위 직원들이 이 사건 학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영상을 활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위 직원들이 이 사건 학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영상에 관한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침해 예방 및 폐기 청구에 관한 판단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저작권자는 위와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

이 사건 학원 직원들이 원고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영상을 복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8

하고, 위 영상의 길이를 편집하였으며, 베트남어 자막을 추가한 뒤 이를 공중송신함으로써 이 사건 영상에 관한 원고들의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는 을 제19 내지 23호증의 각 영상을 근거로 이 사건 학원에서 운영하던 SNS 계정을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영상 또한 이 사건 학원의 SNS 계정에서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학원 직원들은 이 사건 영상의 길이를 원본 영상의 길이보다 짧게 편집하고, 베트남어 자막을 추가하였으며, 위 영상을 이 사건 학원이 운영하던 SNS 계정에 게재하였는바, 위 직원들이 이 사건 영상에 위와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영상을 복제한 후 이를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휴대전화, 외장하드, 전자장치에 저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영상은 디지털 전자정보에 해당하는데, 디지털 전자정보의 특성상 그 저장·반출·은닉이 용이한 점, ③ 피고는 2025. 7. 23. G로부터 이 사건 영상이 포함된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 사건 학원의 SNS 계정에서 일부 영상은 삭제하였으나, 일부 영상은 삭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영상을 완전히 폐기하여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휴대전화, 외장하드, 전자장치 및 인터넷 저장공간 사이트에서 별지 목록 기재 영상의 원본, 사본 및 2차적저작물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 앞서 든 사정들에 의하면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피고로 하여금 그 침해행위를 금지시킬 필요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8

따라서 피고는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영상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 대여, 판매, 전시, 소지하거나 이를 피고 또는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123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휴대전화, 외장하드, 전자장치 및 인터넷 저장공간 사이트에서 이 사건 영상의 원본, 사본 및 2차적저작물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짧은 길이의 영상의 경우 원고들은 1편당 약 600만 원을 지급받고 제작하는데,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영상을 활용한 영상을 최소 23개 이상 제작하여 이 사건 학원 홍보에 사용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영상을 사용하면서 원고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영상 1편당 최소 500만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영상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적어도 각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이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되고(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8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이 그 권리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이 제작한 컨텐츠에 관하여 단가를 책정한 견적서, 다른 법인 등과 컨텐츠 제공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갑 제18, 25, 28 내지 31호증)를 제출하며 이를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영상을 사용함에 있어 원고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기 위하여서는 원고들에게 1편당 약 500만 원의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거나 위 금액이 원고들이 저작재산권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기초로 산정한 손해배상금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견적서상 금액은 견적금액에 불과하고, 계약서상 금액 또한 저작물의 내용, 계약 기간, 이용 조건 및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원고들이 제출한 계약서 사이에서도 저작물의 1편당 단가가 상이하게 책정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들의 영상을 1분 30초 내의 길이로 편집하여 게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계약서는 위와 같은 조건에서의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과 유사한 이용허락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어 있지 않은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기존에 다른 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8

정한 금액(= 저작물 1편당 약 500만 원)이 피고가 이 사건 영상을 게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피고가 이 사건 영상에 관한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저작권법 제125조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한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1호증의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영상을 약 30초~1분 30초의 길이로 편집한 영상을 피고가 운영하는 SNS 계정에 총 23회에 걸쳐 게재한 점, ② 피고가 2025. 7.~8경 이 사건 영상을 집중적으로 게재하였고, 그 이후로는 SNS 계정에 이 사건 영상을 새롭게 게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영상을 게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영상을 게재하면서 출처를 'E'라고 표시하기도 한 점, ④ 피고가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난 이후에는 원고들에게 사과를 하며 일정 부분 책임을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8

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의 침해행위의 태양 및 경위, 침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손해액을 각 7,5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다21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명목으로 각 500만 원의 지급 또한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5. 10.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8.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8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휴대전화, 외장하드, 전자장치 및 인터넷 저장공간 사이트에서 별지 목록 기재 영상의 원본, 사본 및 2차적저작물 등 일체의 폐기청구를 구하는 부분 중 '등 일체'의 폐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수진

판사 백승영

판사 이한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08

별지

목록

인터넷 사이트 'D' 중 원고들이 운영하는 'E' 채널((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재된 영상 저작물.

끝.